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_____)</div>				
승계 내용	⑥ 상호(명칭)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성명(대표자)		⑨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⑩ 주소(사무실)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_____)</div>				
승계 대상	구분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 신고	[] 폐기물처리 신고	[] 전용용기 제 조업 등록
	⑪ 업종				
	⑫ 허가·신고·승인 ·등록 연월일				
	⑬ 허가·신고·승인 ·등록번호				
승계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 폐기물처리업 허가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 [] 폐기물처리 신고
-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p>신고인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수수료 없음</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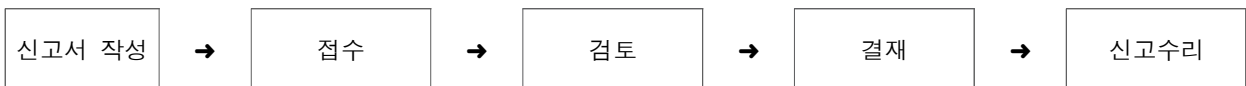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⑥란부터 ⑩란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적습니다.
4. ⑫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승인일·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고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